

의안번호	제 35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발 의 자	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7월 4일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이육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4
----------	-----

발의연월일 : 2023년 7월 4일

발 의 자 : 이육회·김현문·이정범
박병천·박용규·박재주
유상용 의원

1. 제안 이유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충청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도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계약 확대와 관련해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시, 구매비율 이상 구매 노력과 구매계획에 대한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관내 학교의 수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유아교육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8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략)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 6. (생략)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타법개정]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수요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로, 교육감의 책무 등에 대해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